

(보도협조요청)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정부는 금년 2월 7일 3개 국적(방글라데시, 네팔, 이디오피아) 산재 노동자의 경실련 농성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상금을 3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

93년 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인 노동자의 산재율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소급 적용 기간인 3년 동안에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만도 9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 대부분의 산재 노동자들은 응급치료만을 받은 후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다. 동서남아 국가들에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심심찮게 위협과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접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한국인의 양심을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금년 5월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은 현재까지 동서남아 지역 5개국(방글라데시, 태국, 네팔, 스리랑카, 인도)에서, 한국에서 산재당하고 보상 없이 추방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산재자 모임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금년 10월경에는 동북아 지역 2개국(중국, 필리핀)과 서남아 1개국(파키스탄)에서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첫 사례로 한국에서 보상 없이 추방당했던 23명의 산재자들의(방글라데시, 네팔) 보상금 지급요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가난한 이웃나라 사람들을 싼 값의 노동력으로 이용하고, 임금도, 불구에 대한 보상도 책임지지 않는 부끄러운 한국인의 자화상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 아 래 -----

1. 제 목 : 산재, 사망 후 보상 없이 추방당한 방글라데시, 네팔 노동자 23인의 보상금 지급요청서의 노동부 제출에 즈음한 입장 표명

2. 일 시 : 1994년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

8. 장 소 :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노동부 기자실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 859-0430. 851-6386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상금 지급요청을 위해 노동부에
제1차 사례를 접수시키면서 밝히는 우리의 입장

정부는 금년 2월 7일 3개 국적의(방글라데시, 네팔, 이디오피아)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의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농성에 못이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상금을 3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되는 산재율에 비해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소수만이(94.2.7-6월말까지 노동부에 요양 신청을 한 외국인 산재자수는 65명에 불과) 현재까지 요양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산재보상을 발표하기 이전 3년 동안 산재를 당하고 이미 각 나라로 귀향해 버린 산재 노동자들도 수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산재보상 방침을 결정한 지 7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발표에 걸맞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직까지도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은 산재요양을 위한 영문접수양식 조차도 없어서 한글로 된, 읽을 수 없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정책에 적절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은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노동하다가 산재로 불구가 되고, 사망당해서 귀국한 사람들을 금년 5월부터 8개 국가에서 찾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남아시아 5개국(방글라데시, 태국, 네팔, 스리랑카, 인도)에는 한국에서 산재당한 후 귀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산재자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경에는 동북아 지역 2개국(중국, 필리핀)과 파키스탄에도 산재자 모임이 결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민간단체의 노력이 우리 정부의 외국인 산재노동자의 보상금 지급과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정직한 노력이 없는 한 기업주들은 자기 공장에서 산재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응급처치를 한 후 국외로 추방해 버리는 지급과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기업주가 빼앗아가는 상황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방치는 정부의 산재보상금 지급조치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한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팔에 여행간 한국인 교수 한 분이 구타당한 일과, 한국인이 경영하던 식당을 불질러 버린 필리핀에서와 같은 사건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국에서 노동하다가 산재를 당하여 불구가 되고 사망하여 돌아간 사람들로부터 접수한 23건의 사례를 1차로 노동부에 접수시키자 합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이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이를 계기로 산재당한 후 보상없이 추방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를 국가시책으로 지향하는 시점에서 가난한 이웃나라 사람들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정부는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산재당하고 귀향한 이들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와 아울러 이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노동부는 귀향산재자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숙선해서 각국으로 보상금 송금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 보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입국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이 가능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 정부는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이 보상없이 귀국조치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 노동부는 산하 전국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보상없이 귀국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노동부는 산재보상금 지급시 반드시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하고, 기업주가 가로채지 않도록 기업주와 산재자 당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노동부는 실제 사업장 규모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5인이 상임에도 산재 가입을 안한 사업장에 대해서 강제적용 규정을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4.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의 협조아래 임금체불자와 산재자들이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임금과 보상관계를 확인하고 출국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1994년 9월 11일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상금, 체불임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산재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귀향한 외국인산재노동자 제1차 명단

네팔	17명
방글라데시	6명
<hr/>	
총	23명

< 제출자 명단 / 네팔 >

한 : 한국인 노동자 수, 외 : 외국인 노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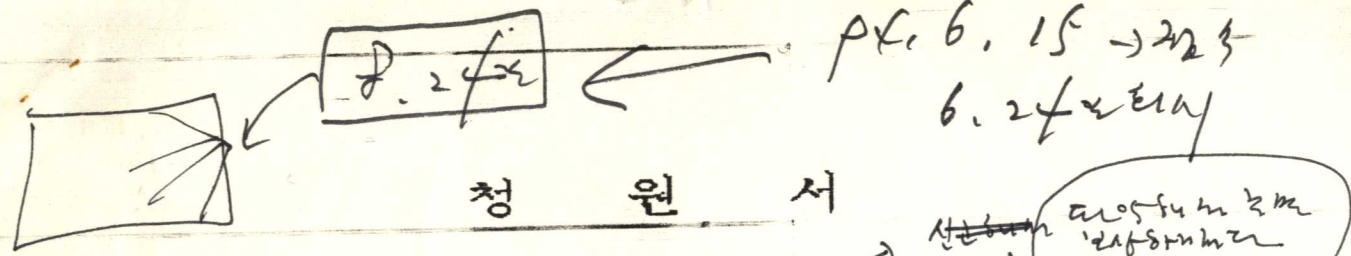
번호	성명. 나이	공 장	공장주소(전화)	치료 병원	사고일시/사고경위	장해 정도
1	라메시 카르리 21세	한 진 한-8 외-3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161-4 032)675-5551	모름	1992. 1. 3 오전 10시 작업중 불량품을 꺼내다가 스위치를 조작하지도 않았는 데 기계가 작동하는 바람에 재해를 당함 (기계고장)	오른쪽 손의 2. 3. 4. 5. 수지 절단.
2	우딤 바하두르 구릉 30세	현 우 산 업 한-25 외-5	울산시 중구. 은남동 714-26 0522)94-8081	울산동강 병원 0522)43- 1931-7	1992. 2. 19일 작업중 제대로 작동 되지 않은 낡은 기계 를 조작하다가 오른 손 팔목이 팔려 들어가 재해를 당함	오른손 어깨 첫마디 중간 부위 밑으로 폐용.
3	암릿트 바하두르 구릉 25세	한 강 삼 유 (송창학) 한-70 외-4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 85의1 전화번호모름	성메리 병원	1993. 3. 5일 5:40분 작업중 기계에 손이 팔려들어가 재해 당함.	오른손 손목 부위 절단
4	람 사 라니아 33세	모 름 (이현철) 한-6 외-3	정확한 주소 모름(마포구 신수동) 02)716-5506	보라매 병원 (신대방동 소재) 840-2150	1992. 3. 22일 안전장치가 없는 수동기계로 작업 하던 중 재해를 당함.	오른손 손목 아래까지 절단
5	우람 정 구릉 46세	정 원 산 업 한-6 외-3	부천시 중구 내동 167 032)674-4277 사장집 전화 032)676-1143	부천내동 소재병원 032)678- 2121-2	1992. 12. 11일 기계안의 물건을 꺼내던 중 기계가 작동해서 재해를 당함.	오른손 손목 부위 절단.

번호	성 명	공 장	공장주소(전화)	치료 병원	사고일시/사고경위	장해 정도
6	크리스나 아디카리 43세	서 진 정 밀 (김운수) 한-5 외-2	경기도 부천시 남구 역곡3동 170-4 032)343-2468 344-1439	오류동 소재 모름	1992. 7. 1일 기계에서 나사를 꺼내고 있던 중 기계의 한 부분이 내려와서 재해를 당함.	오른쪽 4수지 한마디 절단.
7	파 담 코마르 스테스타 28세	명성정밀 공업사 (윤동현) 한-16 외-4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봉암리 65번지 0348)53-4551 02)353-4263	영등포 소재 성애병원 에서 서울 크리닉으로 옮김 737-7755	1993. 1. 7일 프레스기를 작동 시켰으나 스프링이 고장나서 한번누른 기계 계속 작동 돼 재해를 당함.	왼손 2. 3. 4 수지 절단과 5수지 장해.
8	유겐드라 라 마 24세	명성 한-9 외-4	경기도 광주군 양수리 0347)62-8410	광 주 병 원 0347) 61- 2086	199. 10. 3일 경험도 없는 상태 에서 프레스기에 강제로 투입되어 작업하던 중 기계 작동 미숙으로 재해를 당함.	왼손 2. 3. 4. 5 수지 절단
9	수렌드라 꾸마리 라이 23세	모름 한-3 외-4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영장리 0348)943-2651	세란병원 (서대문)	1993. 1. 18일 상다리 만드는 목재 를 자르던 중 잘리 던 나무가 갑자기 부러져 힘주어 나무 를 밀던 몸이 균형 을 잃어 툄날에 재해를 당함.	왼 팔목까지 절단.
10	랄 고 팔름 구릉 23세	일 광 플라스틱 주식회사 한-8 외-4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19 02)634-6205	양평동 2가 소재병원. 02)679-0002	1992. 4. 27일 전 날에 입하다 낀 제품 때문에 기계가 잘못 작동되어 손이 늘려 재해를 당함	오른손 손목 부위 절단.
11	두르가 바하두르 타파 28세	덕영 산업 한-13 외-6	경기도 의왕시 오진동 27-15 전화모름.	이름모름 0343)52- 0115	1992. 4. 17일 노후된 기계의 작동결함으로 재해를 당함.	오른손 손가 락 모두 절단

번호	성명	공장	공장주소(전화)	치료병원	사고일시/사고경위	장해정도
12	랄싱 타파 30세	대성산업 한-25 외-4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내동 131-2 032)674-6513	부천 내동 소재 병원 부정확	1992. 8월 기계가 멈춰 고치려 고 덮개를 열때 오른손이 기계에 말려 재해를 당함.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절단.
13	나라얀 곤바 22세	두봉(?) 산업 한-13 외-2	경기도 송탄시 모곡동 0333)66-5100	한양대학교 병원 02)293- 3111	1992. 10. 27일 롤러 기계에 약을 치는 일하던 중 왼손이 미끄러져 재해를 당함.	왼손 1. 2. 3. 4. 5 수지 완전절단
14	움바하두르 구릉 26세	동양 산업 (고병문) 한-10 외-5	전북 왕곡면 은수리 4-107호 0652)291-0066 291-9276	전북대 병원 0652)250- 1114	1992. 9. 29일 플라스틱을 녹이는 작업 중 메니저의 재촉으로 일을 빨리 하다가 손이 미끄러 져 재해당함.	오른손 엄지절 단 및 부분 폐용.
15	정택진 구릉 39세	삼화종합 기계 한-150 외-2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02)693-6007 693-7007	모름	1992. 7. 1일 프레스기에서 철판 을 꺼내는 순간 동료 미스터 김이 스위치를 눌러 재해를 당함.	오른손 2. 3. 4 수지 둘째 마디 중간까지 절단.
16	수리야 바하두르 구릉 39세	고려기업 한-10 외-3	인천직할시 북구 십정동 226-3 032)578-0780	모름	1992. 4. 27일 사장 지시로 기계 반대쪽에서 일하다 작업중 재해당함. *보상금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장이 전달해 주지 않고 횡령함	오른손 손목 절단.
17	인드라 깃 구릉 24세	대원 플라스틱 한-10 외-4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서포리 032)677-6226	한독병원	1992. 7. 19일 플라스틱 사출기에 서 일하다 손이 기계에 끼었을 때 올라갔던 기계가 내려오면서 재해 당함.	왼손 2수지 절단 및 1. 3. 4. 5수지 부분 폐용.

< 폐출과 명단 / 방글라데시 >

번호	성명	공장	공장주소(전화)	치료병원	사고일시/사고경위	장해정도
1	이스라엘 알리 27세	경전정밀 한-5 외-5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362-12 032)692-3846 (47)	연세정형 외과 시흥시 신천 동 324-5 032)691- 0057 692- 0057	1992. 10. 29일 기계 청소 중 동료 한국인이 실수로 스위치를 작동시켜 재해당함.	왼손 손목부위 절단.
2	하니프 모하마드 26세	광진산업 (이필복) 한-49 외-6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48-7 032)693-9211 -6891-2	영등포 소재 성애병원 846-7541-7 연세 정형외과 032)691- 0057	1992. 12. 26일 안전 교육 없이 고장난 기계에서 일하다가 재해당함.	왼손 2. 3. 4. 5 수지 절단 및 폐용.
3	바둘 후세인 31세	우진정공 한-9 외-3	인천 남동공단 2단지 81블럭 7라인 032)812-2296-7 용산구 갈월동 11-16 02)756-8859	삼일병원 (영등포) 전화모름	1992. 4. 13일 프레스기가 작동중 고장이 나서 재해 당함.	왼손 2. 3. 4 수지 절단.
4	모하마드 쉬두르 라흐만 26세	동해기전 산업 주식회사 한-22 외-7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85 671-1057-8 634-6467	중하병원 (문래동) 633-4012	1993. 2. 14일 안전 장치없는 기계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함. 같은 기계에서 다른 방글라데시 노동자 라작도 사고당함.	왼손 2. 3수지 완전폐용.
5	모하마드 이스마일 28세	암봉기르 산업 한-50 외-3	경남 양산군 양산을 북장리 237-12번지 0523)385-9588	복지병원 051)246- 0132	1993. 3. 29일 안전장치(기계분) 가 없어서 작업중 재해당함.	왼손 손목 부위 절단.
6	모하마드 알리 36세	동성 산업 한-70 외-24	경기도 남양주 군 운현면 영암리 765번지 0351)866-1023	동두천시 소재 모름	1992. 6. 3일 오래된 로올러 기계 의 고장으로 작업 중 재해당함.	왼손 2. 3. 4. 수지 절단. 손목아래 부분 완전 폐용.



-제 목: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본국송금 및 재입국 허가를 위한 청원

-피청원인: 노동부장관, 상임위원, 박무영, 국무총리, 국회의원, 이영순, 이재정, 손봉호, 이만열, 오제식, 김진홍, 조만

-청원인: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고 문: 이영순, 이재정, 손봉호, 이만열, 오제식, 김진홍, 조만 (직인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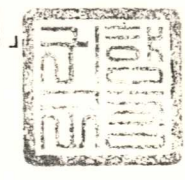
(주소는 이복순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주소: 서울시 구로본동 409-54 한국여성노동자회 전화: 869-1347
- 주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1-1 성공회신학대학교 전화: 618-0888
-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81-33 전화: 584-6719
- 주소: 서울시 반포본동 반포아파트 111동 105호 전화: 533-0150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 크리스찬 아카데미 전화: 744-3964
- 주소: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화산리 산83 두레마을 전화: 0339)583-3743
- 주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효성 상아아파트 7동 605호 전화: 032)467-1588

- 공동대표: 박승룡 주소: 관악구 신림13동 652-2 두레학숙 전화: 515-6754
- 이상경 주소: 중구 서소문동 58-17 명지빌딩 301 전화: 778-1038
- 박무영 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32번지 8/1 전화: 0346)557-3773

사무국장: 김재오 (인) 주소: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678-10 102호 전화: 0345)408-4025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3동 148-40 정환빌딩 5층
 전화: 859-0430 팩스: 858-7829



확한 조사와 아울러 송금조치를 단행해 줄 것을 청원하오니 이를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청원의 이유

1)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임금체불, 산재를 겪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이미 귀국했거나, 지금도 계속해서 귀국당하고 있는 사태는 단기적인 경제 이익만을 생각하는 짧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은 반드시 경제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한 후 폐품이 된 기계를 버리듯이 하는 행위는 국가의 윤리와 도덕을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2) 경제이익의 논리에만 치우쳐 노동력을 쓰고도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윤리가 저하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윤리의 황폐화는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3) 외국인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역울한 경험을 한 이들에 의해 필리핀, 중국조선족거주지역,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등의 나라에서 한국인에 대한 악감정과 폭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소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유지되거나 방치된다면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국가적인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뿐 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4)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이민노동자의 이동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20년 이내에 이민노동자문제가 아시아 지역문제의 중요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국제기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내에서의 빈부격차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때에 이 지역내의 부국과 빈국사이의 경제윤리의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 하는 국가가 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5) 93년을 기점으로 아시아는 우리나라 수출고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는 계속 증가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의 국외활동과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정의를 수립하는 것 외에도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6) 우리는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북예멘과 독일의 통일 경험이 교훈 하듯이 두 체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를 경제논리로만 이용하려는 생각을

비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사람을 값싼 노동력, 즉 경제논리로만 보려는 한 사회의 욕심을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윤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통일민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민족윤리를 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 산재로 불구가 되어 귀향한 노동자나 사망자 가족들은,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본국에서 낸 빚을 갚지도 못하고, 산재로 인해 본국에서의 취업도 불가능 하여 이중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거나, 가장이 사망한 여성의 경우, 여성의 노동을 창녀가 되는 것보다 천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삶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마땅히 보호 되어야 합니다.

8) 따라서 21세기에 세계속의 모범적인 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가 올바른 도덕적, 경제적, 외교적, 민족통일적, 인도적 이해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 지기 위해서도 이미 귀향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산재보상금을 각 해당 국가로 송금하는 조치가 단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94. 5. 28.

청원인: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3동 148-40 정환빌딩 5층)

#별지1

『귀향한 외국인 산재노동자 통계인원에 관한 설명』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3년도 내국인 전체 산업재해율은 1.3%이며, 그중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재해율이 3%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외국인노동자의 숫자를 10만명으로 계산했을때 연간 외국인산재노동자 수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재해율 3%를 적용 산출하면 3,000명이 됩니다. 93년 11월 「천주교서울대교구」에서 필리핀인과 네팔인 9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결과 1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취업율이 95.5%,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율이 89.6%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할때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을 기준으로 외국인노동자 산재율을 계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산재보상을 발표하기 전 3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산재당한 외국인노동자는 총 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중 4,000여명이 현재 미귀국했다고 감안하더라도 귀국한 이들의 숫자는 5,000여명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문화충격, 경험미숙, 장시간노동, 언어소통불능 등)을 고려해 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설문조사에서 37.6%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작업중 질병과 상해를 당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사실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전체숫자를 10만명으로 본것은 92년 6월10일 부터 7월까지 법무부출입국관리소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파악한 외국인노동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당시 자진신고한 외국인숫자는 61,112명 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동 중이었거나,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 등을 40% 정도로 계산하여 추측한 숫자입니다. 이 40%는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 보도된 통설을 근거로 낸 추정치입니다.